

이 의 신 청 서

- ♣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단속(부정주차요금 부과, 견인)되었거나, 노상·노역주차장의 주차요금(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단속일(또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이의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직접 또는 FAX(376-4068)로 제출(FAX 전송 시 아래 거주자, 노상 안내 전화로 접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민원대책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의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이의 신청인

신청인	함 운하 (서명)	핸드폰번호	010 6324 5315
자동차 등록번호	204 9352	차 명	크루즈
주차일시 (위반일시)	2월 22일	주차장소 (위반장소)	마포 서교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주 소	9-39 지03		

■ 이의신청 사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22일 오전 8시경 본명 거주자 방문 주차를 신청하였던 결과까지 완료하였음
 이후 인해 차내 분가가 되었는지 확인 차를 확인 조치함
 이후에도 신청하고 차를 찾으니 갔다가 못보았음 이후에 견인되었
 되었지만 통보로 이미 이후에 주차를 견제가 되었음 이후에도 견인
 차내내에 해 가려고 견인하려 차를 찾으니 갑작 견제인들까지 제가
 캐이브로 한때는 견제 해의 상해함으로 본명 신청하였던 견제차까지
 하였는데 견제차 대항은
 부당함입니다

증빙서류
(영수증 등)

※ 귀하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제출)해 주십시오

하였는데 견제차 대항은
 부당함입니다

■ 요구(보상) 사항

보상요구 금액	68,300 원	보상요구액 명세	보상금 태세미 지급금
보상 시 입금계좌 (본인명의계좌)	♣ 금융기관명 : 기업은행 ♣ 계좌번호 : 403-056161-02-019		
	♣ 예금주 : 함운하 (신청인과 동일)		



마포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귀중

☎ 02-300-5048(거주자), 300-5058(노상) FAX : 02-376-4068

신청 일시	20 18 . 2 . 14
접 수	접수일시 20 18 . 2 . 14
	접 수 자 함운하